

# 종합금융상품 ON-LINE 거래 약정서

(신규,변경,해지)

담당	책임자	부점장

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

## ■ 출금계좌

예금주	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
계좌번호	1.	통장인감	
	2.	통장인감	
주소		전화번호	

## ■ 거래은행 입금계좌

거래은행	은행	지점	은행	지점
계좌번호				
예금주				
거래은행	은행	지점	은행	지점
계좌번호				
예금주				
참고사항 (신청내용 등)				

\*출금계좌와 거래은행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

본인은 귀하의 종합금융상품 ON-LINE거래 약관을 틀림없이 수령 및 숙지하였으며 위와 같이 거래를(신규,변경,해지)신청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본인(예금주) \_\_\_\_\_ (인)

**\*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십시오**

인감대조 및 본인확인

준비하실 서류

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: 신분증,통장인감,지정할 거래은행 입금계좌 통장

법인 : 법인인감증명서,통장인감,위임장,대리인 신분증,지정할 거래은행 입금계좌 통장

## ※유의사항

고객이 '종합금융상품 ON-LINE거래(이체) 신청서'를 이용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출금 신청 후 사전 신고된 고객의 입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7조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출금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

# 종합금융상품 ON-LINE 거래 약관

## 1. (출금)

- ① 고객은 출금 신청시 당행에 팩스 또는 이메일에 의한 '종합금융상품 ON-LINE 거래(이체) 신청서'를 제출하여야 하며, 당행은 신청서 상의 출금계좌와 사전에 약정된 온라인거래약정서 상 출금계좌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처리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당행은 이미 신고한 고객 명의의 입금계좌로만 송금하기로 하며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 불구하고 소정의 지급청구서 없이 처리 됩니다.
- ③ 당행이 출금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출금신청 당시 현금화된 예금금액에 한정됩니다.
- ④ 고객은 출금신청 후 지정 입금계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⑤ 자금이체 후에는 거래내역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당행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당일에 고객이 요청한 거래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의 출금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- ⑥ 전화에 의한 출금 신청 가능시간은 **은행영업일 09시부터 16시까지**입니다.

## 2. (사고, 변경사항 신고)

고객이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신청하는 경우 중금업무 취급점에 서면으로만 하여야 하며 신고인감 분실, 도난 및 통장분실 등과 같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제사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금업무 취급점 및 콜센터에 유선신고 후 익영업일까지 중금업무 취급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<신고 요령>

구 분	중금업무 취급점	콜센터
사고접수 가능시간	<b>은행영업일 09:00 ~16:00</b>	24시간
전화번호	통장 앞면 참조	1599-1111 또는 1588-1111

※ 중금업무 취급점 : 중금영업부

## 3. (유의사항)

- ① 고객이 '종합금융상품 ON-LINE거래(이체) 신청서'를 이용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출금 신청한 후 사전 신고된 고객의 입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7조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출금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신고된 고객의 입금계좌로 송금한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 당행은 책임을 지지 **아니합니다**.
- ③ 고객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지지 **아니합니다**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④ 전쟁, 천재지변, 전산장애,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신청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4.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, 관련 예금약관을 준용합니다.

